

光州直轄市西區廳 및 洞事務所所在地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4年 6月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4年 6月 16日
- 나. 提 出 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4年 6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4年 6月 21日
- 마. 開催 回數 및 日數 : 1回 (94年 6月 21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課長 曹 秉 峻)

가. 提案事由

- 화정3동은 2.18㎢의 면적에 94년 5월 31일 현재 인구가 45,351명인 큰 동으로 94.7.1.자로 분동이 됨에 따라,
- 분동이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분동과 함께 화정3동, 화정4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풀어나는 행정수요에 구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- 제2조(소재지)중 별표.
 - 동사무소 『화정3동』을 『화정3동』, 『화정4동』으로 변경하고
 - 현 화정3동사무소 위치인 『화정동 891』번지를 화정3동사무소 위치로 하고 『화정4동사무소』 위치를 『광주직할시 서구 화정동 919·18번지』로 한다.

3. 專門委員 檢討 報告要旨

(專門委員 : 趙 澤 龍)

- 본안 분동에 대해서는 1993년 3월 12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화징3동 분동에 대한 의견 요구가 있어 동년 3월30일 제22회 제2차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본 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안으로서,
-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없음.

5. 討論要旨 : 없음.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.

7. 少數意見要旨 : 없음.

8. 其他事項 : 없음.